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별정직공무원 (8급상당)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및 채용후보자 등록 안내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별정직공무원 (8급상당)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및 채용후보자 등록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3일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1. 최종합격자 명단

선발예정 직위	최종 합격자		
	인원(명)	응시번호	성 명
대외협력담당관 (민원담당)	1	807	문 ○ 지

2. 채용후보자 등록 안내

가. 등록대상 : 최종합격자

나. 등록기간 : 2020. 4. 23. (목) ~ 2020. 4. 28. (화)

※ 등록기간 마감일 18:00까지 **직접 등록 장소에 방문**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등록장소 : 서울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A동 13층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운영지원과

라. 제출서류

- ① 신원진술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서식 : 1>
- ② 채용 신체검사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1부 <서식 2>
 - 지정병원은 없으나, 제출 양식으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③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부
- ④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부
 - 본인명의 기본증명서 (상세)로 발급받고, 주민등록번호 뒷번호 까지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⑤ 주민등록초본 1통 (군 경력이 기재된 것)
- ⑥ 주민등록등본 1통
- ⑦ 신원진술서에 부착한 사진과 동일한 사진 (3cm×4cm) 1매

마. 제출방법

- 최종합격자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소지하고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유의사항

가. 등록기간 내에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공무원임용령」제11조제2항)하며, 채용후보자 등록을 포기할 경우 임용포기서 (서식3)를 작성하여 등록기간 내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나.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이어야 하며, 제출서류 중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상세) 등 증명서류는 최근 3개월 내에 발급받은 것 이어야 합니다.

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결격사유 조회 등을 완료한 후 결격사유가 없을 시 임용 예정입니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 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임용 후 즉시 퇴직한 경우, 합격자에게 임용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비합격자 순번에 의해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마. 기타 채용후보자의 임용에 관한 문의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운영지원과 (☎ 02-6124-7553, 755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서식 1 >

[별지 제20호서식]

(3쪽 중 제1쪽)

신 원 진 술 서

※ 모든 기재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고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 사 진 】 사진파일 가능 (3cm×4cm) · (3.5cm×4.5cm)	
등록기준지							
주 소							
실거주지							
직 장	직장명 : 소재지 :			연 락 처	직장전화 : 휴 대 폰 : E-mail :		
국 적	<input type="checkbox"/> 대한민국	<input type="checkbox"/> 복수국적 국가명:	<input type="checkbox"/> 외국국적 국가명:	배우자 및 자녀 국적			
자격·면허							
재 산	본인 및 배우자	부동산 :	만원,	동산 :	만원,	채무 : 만원	
	미혼 자녀	부동산 :	만원,	동산 :	만원,	채무 : 만원	
정당·사회 단체 활동	<input type="checkbox"/> 있음	단 체 명		기 간		직 책	
	<input type="checkbox"/> 없음			. . ~ . .			
병 역	본 인	군 별	병 과	최종 계급	기 간		미필 사유
	자녀 (성명)				. . ~ . .		
	자녀 (성명)				. . ~ . .		
학 력 (고교이상)	학 교 명	기 간		전공 학과	학 위	소 재 지	
		. . ~ . .					
		. . ~ . .					
		. . ~ . .					

210mm×297mm [백상지(80/m²) 또는 중질지(80/m²)]

< 서식 2 >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12. 24.>

(앞쪽)

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구 분	② 시험실시 기관	③ 응시직명	④ 응시번호	⑤ 성 명	사 진 (3.5cm × 4.5cm) ※ 압인 또는 계인
⑥ 검사 시					
⑦ 재 사용				⑧ 주민등록번호	

검 사 내 용

키	cm	체 중	kg
허리둘레	cm	혈 압	
(교정)시력	좌: ()	색 신 (색 각)	(교정)청력
	우: ()		
종 양 질 환		이 비 인 후 질 환	
호 흡 기 질 환		심 혈 관 질 환	
소 화 기 질 환 (간 질 환 포함)		신장/비뇨기계질환	
내 분 비 질 환		혈 액 질 환	
신 경 질 환		피 부 질 환	
근 골격계 질환		안 질 환	
정 신 질 환		흉 부 X선 검사	
기 타			

위와 같이 검사했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검사 결과 합격 여부	[]합 격 []판 정 보 류	합격 사유	
판정보류 사유 (질환명 및 재신체검 사 필요 사유 등)	*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진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유효기간	판정일부터 1년
------	----------

210mm × 297mm [백상지(80g/㎡)]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응시자]

1.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 가. ②란은 시험실시기관을 적어야 합니다.
(예: 인사혁신처, 국세청 등)
 - 나. ③란에는 응시한 직명을 적어야 합니다.
(예: 9급 세무직, 7급 전기직 등)
 - 다. ⑦란은 신체검사 후 1년 이내에 같은 직렬의 다른 시험에 응시하는 등의 사유로 다시 사용할 경우에 적어야 합니다.
2. 응시자는 굵은 선 안쪽의 사항을 모두 적은 후에 신체검사서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함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 응시자는 본인 질환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검진기관]

1.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押印) 또는 계인(契印)을 해야 합니다.
2. "검사 내용"란은 검사자가 검사 결과를 적고 확인해야 합니다.
 - 가. 검사 결과 기재의 예: 질병명(심부전증, 백혈병, 척수종양 등)을 적거나 "정상", "양호", "이상 없음" 등으로 적어야 합니다.
 - ※ 필수사항: 질병이 있는 경우 "합격" 또는 "불합격"과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을 적어야 합니다.
 - ※ 검진기관에서는 필요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문진표를 채용 신체검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나. 임신부나 흉부X선 검사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흉부X선 검사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제 사유를 흉부X선 검사 항목에 적습니다.
 - (작성 예시) 임신부인 경우 "임신으로 인해 흉부X선 검사 면제"라고 적습니다.
3. "검사 결과 합격 여부"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검진기관의 장이 판정 결과 등을 해당 []안에 "√"로 표시하고 그 사유 등을 적어야 합니다.
 - ※ 응시자가 본인 질환에 대해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한 경우 판정에 참고합니다.
 - 가. 합격 사유 기재의 예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 0000 질환에 해당하나 000000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예시: '만성골수성백혈병'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官解)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 나. 판정보류 사유 기재의 예
 - 0000 질환에 대해서는 000000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000000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 필요 (예시: 중추신경계 염증성 질환이 있는 경우로 사지가 쇠약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신경과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가 필요함)
 - ※ 응시자의 질환이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이 곤란한 상황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의가 재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판정보류로 기재합니다.
4. 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